

# 2019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대한민국 실시 모집요강

\* 대한민국 응시자는 반드시 본 모집요강을 참조하여 신청 할 것. (금년 시험실시 2019년도부터 장학금 지급)  
\* 일본 문부과학성의 모집요강을 기본으로 대한민국 내 실시 요강을 작성함에 있어 추가된 내용은 -----밑줄로 표시하였음.

## 전수학교유학생

일본정부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전수학교에서 전수학교유학생으로 수학할 외국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전수학교유학생의 정의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에 재학하는 자, 또는 이에 앞서 일본어 등 예비교육을 받는 자를 말함.

#### 2. 모집 분야

전수학교 유학생에 신청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희망하는 희망 전공 분야·학과를 선택하고, 신청서의 「일본에서의 희망 전공 및 학과 등」란에 기입 할 것.

(1) 아래 A ~ G 중에서 희망하는 전공 분야를 하나 선택할 것.

A. 공업 관계	B. 위생 관계	C. 교육·사회 복지 관계	D. 상업 실무 관계
E. 의류·가정 관계	F. 문화·교양 관계	G. 기타	

(2) 별지 「전공 분야와 관련된 주요 학과 등」을 참조하여, 선택한 전공 분야 안에 설정된 「학과명」에서, 희망하는 학과를 선택 할 것. 제2희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주 1) 전공 분야 A ~ F중 에 설정된 「기타」 및 「G. 기타」를 선택하는 사람은, 신청서의 「희망 전공 분야」

「희망학과명」 「희망 이유」란에 어떤 분야를 희망하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입 할 것. 또한 전공 분야에 따라 수용 학교가 없거나, 또는 전수 학교에서의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수용 학교가 없는 경우가 있다.

(수용이 어려운 학과의 예) 의학, 생물학, 비행기 조종사 등

#### 3.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 수학하는 것을 통해 일본과 자국과의 가교가 되고, 양국 나아가서는 세계의 발전에 공헌하는 인재를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다.

(1) 국적

일본 정부와 국교가 있는 나라의 국적(대한민국)을 가지고 있을 것. 신청 시에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신청 시에 일본 이외에 생활 거점을 두고 있고 일본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에 한해서는, 일본입국 시까지 외국의 국적을 선택하고, 일본 국적을 포기할 예정자는 대상으로 한다. 선고는 응시자가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에 소재하는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이하, 「재외공관」)에서 실시한다.

(2) 나이

원칙적으로, 1994년 4월 2일부터 2002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

(3) 학력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로 한다.

- ① 외국에서 학교 교육 12 년 과정을 수료 한 자. (2019년 3월까지 졸업 예정이 확실한 자를 포함한다.)
- ② 외국에서 일본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과정을 수료 한 자. (2019년 3월까지 졸업 예정이 확실한 자를 포함한다.)
- ③ 상기 이외로 신청 시점에서 일본의 전수 학교 전문 과정 입학 자격을 가진 자.

(4) 일본어 등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자. 일본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일본 입국 후에도 나아가 일본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자. 또한,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전수학교 전문과정의 교육을 받으려는 자.

(5) 건강

소정의 건강진단서 양식에서 일본 유학에 있어서 심신 모두 지장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한 자.

(6) 출발시기

원칙적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일본 입국이 가능한 자. 거주지로부터의 출발도 4월 1일 이후로 한다. 자기의 사정에 따라 소정의 기간 이전에 일본에 입국할 경우 입국 여행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문부과학성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된 기간 마지막 날까지 일본에 입국 할 수 없는 경우는 채용을 사퇴할 것.

(7) 사증(비자)취득

일본 입국 전에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1의 4에서 정한 「유학」 비자를 취득하고, 「유학」이라는 재류 자격으로 입국해야 한다. 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적 국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현지 발급 하는 것으로 한다.

일본 입국 전에 원칙적으로 국적 국 소재 재외 공관에서 「유학」 비자를 취득하고, 「유학」이라는 재류 자격으로 입국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다른 재류 자격 ( 「영주자」, 「정주자」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유학」으로 변경 한 후, 새롭게 입국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비 외국인 유학생의 신분 종료 후, 제차 「영주자」 또는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신청해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할 것.

(8)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채용 이후에 밝혀 진 경우에는 사퇴할 것.

- ① 7월 말일 시점에, 현역 군인 또는 군속의 자격인 자.
- ② 문부과학성 또는 채용하는 학교가 지정하는 기일에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자.
- ③ 과거에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이었던 자(일본 입국 후 사퇴자 포함). 다만, 일본에 유학 중에 문부과학성 학습 장려비 (MEXT Honors Scholarship)을 수급 하고 있던 자는 예외로 한다.
- ④ 현재, 일본정부(문부과학성)장학금제도에 의한 다른 프로그램(연구유학생·학부유학생·고등전문학교유학생 등)과의 중복 신청을 하고 있는 자.
- ⑤ 신청시점에 이미 재류 자격 「유학」으로, 일본의 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자, 그리고 자국에 있어서 본 장학금의 신청 시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 전까지 사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일본 대학 등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자, 다만, 9월 말일 이전까지 확실하게 귀국하는 자이거나, 대학간 교류 협정 등에 의한 교환학생, 또는 단기어학연수 등으로 일본의 대학 등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사비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주한일본대사관이 실시하는 입국전 사전오리엔테이션(내년 3월 예정)까지 귀국이 확실하고, 재류자격을 「유학」으로 새롭게 취득 후, 일본으로 입국 하는 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 ⑥ 장학금 지급 개시 이후에 일본정부(문부과학성), (독)일본학생지원기구 또는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정부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장학금을 받을 예정인 자.
- ⑦ 「졸업예정자」로, 소정의 기일까지 학력의 자격 및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 또한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로 10월 말까지 졸업예정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응모 시점에 고등학교 과정을 휴학 중인 자.
- ⑧ 신청 시에 이중국적자는 신청마감일 이전까지 일본국적 사퇴 희망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일본 입국 시까지 일본 국적을 이탈한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자.
- ⑨ 일본 입국 후, 재류자격을 「유학」이외로 변경한 자.
- ⑩ 일본 장기 재류자 (2019년 4월 1일 이전까지 과거 5년간 합산하여 3년이상 일본에 재류한 자. 그리고,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응모 시점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재류, 또는 재류 예정인 자. 다만, 응모 시점에서 귀국 확인서를 제출하고 9월 말일까지 귀국하는 자는 대상으로 한다.). 덧붙여, 신청 마감 시점에, 만 1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는, 면접 서류 제출일 이전까지, 현재까지의 출입국 사실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재류기간이라 함은, 재류 자격을 취득하고 종료(귀국)시까지의 총 기간을 말하며, 이와 함께, 여행 등의 일시 체류자격으로 단기간 체제한 기간 등을 모두 합한 기간임.
- ⑪ 해외 교육 기관 출신자 등 개별 접수 희망자 중에서 해당 기일까지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자.
- ⑫ 대사관 주최 입국 전 사전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없는 자. 또한 지정기간 내에 현지에서 발급하는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자.

(9) 기타

일본 유학 중, 일본의 국제화에 이바지하는 인재로서, 널리 지역 학교와 지역의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자국과 일본과의 상호 이해에 공헌함과 동시에, 졸업 후에도 유학한 대학과 긴밀한 연대를 가지고, 졸업 후의 앙케이트 조사 등에도 협력하는 등, 귀국 후에는 재외공관 등이 실시하는 각 사업에 협력함으로써, 자국과 일본과의 관계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자를 채용한다.

4. 장학금 지급 기간

- (1) 2019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3년간(일본 입국 직후부터 1년간의 일본어 예비교육(이하, 「예비교육」이라 한다)을 포함 한다.)으로 한다.
- (2) 장학금 지급 기간연장에 대하여  
전수학교 졸업 후, 원칙적으로 대학 3년차로 편입을 허가 받은 자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고, 특히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에 의해 진학에 따른 심사를 받아 장학금의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5. 장학금 등

- (1) 장학금: 월액117,000엔을 지급한다(특정 지역에서 수학·연구하는 자에게는 월 2,000엔 또는 3,000 엔을 월액 단가에 가산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각 연도의 금액이 변경 될 수 있다. 전수 학교 또는 예비 교육 기관을 휴학 또는 장기 결석 한 경우, 그 기간의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2) 교육비: 전수학교 등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 검정료는 문부과학성이 부담한다.
- (3) 여비
  - ① 입국 여비

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여행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항공권을 교부한다. 항공권은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원칙적으로 국적 국내)으로부터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채용 대학이 통상의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또한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공항세, 공항 사용료, 여행에 필요한 특별세, 일본내의 여비(항공기환승 비용을 포함.), 여행 보험료, 휴대폰·별도수하물에 관련된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 부담으로 한다. 또한 국적·국에 재외공관이 소재하지 않아, 비자 신청을 위해 제3국을 거쳐서 일본에 입국하는 자. 또는 국적·국에서 직항편이 없는 자에 대하여, 연계 국내 여비, 숙박비 등은 본인이 부담하고, 국적·국에서 거치는 국가까지의 항공편과 그 국가에서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채용 대학이 정상적인 경로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제 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문부과학성이 교부한다. 「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현주소로 하나, 일본 입국 전에 국적·국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일본 입국 전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를 「거주지」로 판단하여,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의 항공편을 마련한다. 또한 비자 신청을 위해 제3국을 거치는 것을 제외하고 자기 사정에 의해, 국적·국 이외에서 일본에 입국 할 경우, 항공권을 교부하지 않는다.

② 귀국 여비

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전수학교를 졸업하고, 상기 「4. 장학금 지급 기간」에 명시된 장학금 지급 기간 종료 월 내에 귀국하는 유학생에 대해,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항공권을 교부 한다. 항공권은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채용 학교가 정상적인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에서 해당 학생이 도착하는 장소의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원칙, 국적 국내)까지의 하급 항공권으로 한다.

귀국하는 유학생의 일본에서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공항세, 공항 사용료, 여행에 필요한 특별세, 국적 국내 여비(항공기 환승비용을 포함한다.), 여행보험료, 휴대품·별도 수하물에 관련된 경비 등은 유학생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개인 사정 및 아래 「6. 장학금 지급 정지 사항」의 사유로 장학금 지급 기간 종료 달 이전에 귀국 하는 경우에는 귀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장학금 지급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예: 일본에서의 진학, 취업), 일시 귀국 할 때의 귀국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6. 장학금 지급 정지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또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기간에 지급된 장학금의 일부 또는 모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처분이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도 있다.

- ① 신청서류에 허위·부정 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 ②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③ 일본 법령을 위반하여, 무기 또는 1년을 넘기는 징역 그리고 금고에 처해졌을 때.
- ④ 전수학교 또는 예비 교육기관의 학칙 등을 근거로 한 징계로 퇴학·정학·훈고 및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는 경우 또는 제적되었을 때.
- ⑤ 전수학교 또는 예비 교육기관에서 학업 성적 불량이거나 정학, 휴학 등에 의해, 표준 수업 연한 내에 수료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 ⑥ 「유학」의 재류 자격을 새로 취득하지 않고 일본 입국시 또는 「유학」의 재류 자격이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되었을 때.
- ⑦ 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 특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지급 받았을 때.
- ⑧ 채용 후,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 기간 연장의 승인 없이 상위 과정에 진학했을 때.

7. 선고(선고 일시 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립국제교육원 지시에 따를 것.)

- (1) 재외공관은, 신청서류, 필기시험 및 면접에 의해 제1차 선고를 행한다.
    - ① 필기시험의 시험 과목(반드시 전원이 시험할 것.): 일본어, 영어, 수학(각 과목별 평균 40점이상일 것.)
    - ② 필기시험 시에는 계산기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 ③ 필기 성적이 우수할 것(문부과학성에서의 채용은 각 과목별 추천대상자 평균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과목별 평균점은 대략 수학이 50점, 영어 70점, 일본어 70점 정도 이상을 받아야 채용 된다고 한다. 공업·상업실무의 경우 수학과목 우수자, 기타 분야의 경우 일본어 성적 우수한 자를 중시함.)
  - (2) 제 1차 선고 결과 통지는 재외공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로 하여, 채용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제1차 선고에 합격한 자가 반드시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채용되는 것은 아니다.
  - (3) 제 1차 선고 합격자는 재외공관에서 문부과학성로 추천되어 문부과학성은 제1차 선고 결과에 기인하여, 제2차 선고를 행한다. 이때 전공 분야별로 선고를 행한다.
  - (4) 제2차 선고의 결과는 재외공관을 통해 대체로 일본입국 년 1월 중에 통지한다. 채용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또한, 배치 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 (주1) 면접대상자 선정은 각 과목 평균이 40점 이상인 자 중, 영어+수학 성적 합이 110점 이상인 자.  
 (주2) 면접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 발표와 함께 안내 예정.

8. 전수학교의 수학 내용 등

- (1) 예비교육
  - ① 최초의 1년간은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예비 교육 기관에 입학하여, 전수학교 수학에 필요한 일본어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 사정 등이다.
  - ② 예비 교육을 수료한 자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한 전수학교에 입학한다. 또한, 예비교육을 수료하지 못할 경우, 전수학교로의 입학은 어렵고, 그 시점에서 장학금은 중지되고 귀국하게 된다. 이 경우 귀국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2) 전수학교에서의 수학
  - ① 예비 교육 수료자가 입학하는 전수학교는, 문부과학성이 예비 교육 기관 및 관련 전문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전수학교 유학생, 전수학교의 과정 중, 고등학교 졸업을 입학 자격으로 하는 전문과정에 입학하여, 2년간의 전문 교육을 받는다. 졸업한 자에게는 졸업 증서가 수여된다. 또한, 대부분의 과정에서는 졸업자에게 「전문사」의 칭호가 부여된다.
  - ③ 수업은 모두 일본어로 진행된다.
- (3) 전공분야의 변경
 

예비 교육 및 전수학교에서의 수학에 있어서 전공 분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9. 신청 서류(제1차 선고 제출 서류는 국립국제교육원 지시에 따르며, 아래 내용은 면접 대상자의 제출서류이다. 면접대상자는 면접대상자 안내 지시사항을 반드시 참조할 것.)**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국적·국내의 재외 공관에 그 지정 기한까지 제출한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No.	서류종류별	원본 1부	사본 1부	비고(본제출서류는면접대상자제출서류)
①	신청서	☉	○	2019년도관양식을사용할것(주 4)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분사진1매부착
②	최종출신학교의 전 학년 학업 성적증명서	☉	○	출신 학교 또는 해당 정부가 발행한 것(인터넷 민원 발급 등은 불가)(주 5)
③	최종출신학교의 졸업/졸업예정 증명서	☉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주 6)
④	최종출신학교장 또는 담임교원의 추천장	☉	○	양식은 자유. 생략 있음.
⑤	간경전단서	☉	○	2019년도 관양식을 사용할 것
⑥	재학증명서	●☉	●○	대학등에 재학중인 자만 제출
⑦	대학입학자격 등 인정시험 합격증명서	●☉	●○	검정고시 합격자만 제출(주 6, 7)
⑧	어학능력증명서	●○	●○	언어에 관한 능력 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만 복사본 2부 제출(주 8)
⑨	전수면접대상자 엑셀파일(면접대상자용)	데이터	-	2019년도 데이터양식 사용. 면접대상자만 제출

- (주 1) ☉과 ○는 제출 필수(☉는 원본 서류, ○는 복사본, 는 사진 부착,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 파일)이며, ●는 해당자만 제출한다.
- (주 2) 모든 서류들은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일본어 혹은, 영어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주 3) 상기의 서류는 원본 1부, 복사본 1부 모두 2부로 만들어 제출할 것. 또한 모든 서류의 첫 장 오른 쪽 상단에는 반드시 ①~⑧까지의 신청서류번호(상기 표의 No. 참조)를 기재할 것. 그리고, ⑨ 전수 면접대상자 엑셀파일 데이터는 이메일 kyuho.cho@so.mofa.go.jp 로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는 복사하여 보관해 둘 것.
- (주 4) 신청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선명한 화질로 사진전용 용지에 인쇄된 것으로 하고, 크기 4.5×3.5cm 상반신·정면·탈모한 것. 또한, 사진의 뒷면에 국적 및 성명을 기입할 것. 신청서의 데이터에 사진 데이터를 붙여 신청서를 복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공하지 않은 여권 사진 데이터만 가능하며, 신청서 인쇄시, 용지는 인쇄용 용지를 사용, 선명한 화질의 컬러 인쇄만 가능하다.)
- (주 5) 최종 출신 학교의 성적증명서는, 학년마다 취득한 전과목의 성적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성적이 몇 단계로 평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최종 출신 학교가 중고 또는 초중고 일괄교의 경우, 고등학교(후기중등교육)에 대응하는 전 학년분의 학업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것.
- (주 6) 최종 출신 학교 졸업증명서 및 대학 입학 자격 등, 인증시험 합격증명서는 졸업증서 및 합격증 사본도 대응 가능 (일절 반환하지 않으므로 원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해당 출신 학교, 시험 시행기관 등의 책임자에 의한 확인 증명을 붙일 것.
- (주 7) 검정고시 합격자가 응모하는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제출하면, ② 학업 성적증명서, ③ 졸업증명서, ④ 추천서 제출은 생략 가능하다.
- (주 8) 인터넷에서 인증서를 인쇄할 경우, 신청자의 성명 및 해당 언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레벨, 점수 등)이 포함 된 페이지를 인쇄하여 제출한다. 신청서에 작성한 경우에만 제출.
- (주 9) 최근 5년간 1년이상 일본에 체류한 자, 또는, 체류 중인 자는 출입국기록 증명서를 면접 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할 것.
- (주 10) 상기 서류 양식은, [Study in Japan 홈페이지](http://www.studyjapan.go.jp/jp/smap_stop1-applicationsruts.html)(http://www.studyjapan.go.jp/jp/smap\_stop1-applicationsruts.html) 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⑨ 면접대상자 엑셀파일은 면접대상자에게 이메일로 송부 예정.

**10. 주의 사항**

- 일본 입국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기후, 풍토, 습관, 일본과 모국과의 법제도의 차이, 학교의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입국 후 장학금을 수령하는데 까지 약 1개월에서 1개월 반정도 필요하므로, 생활 자금으로서 대략 필요로 하는 비용을 최저 미화 2,000달러 정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학금은 일본 입국 후, 각자가 개설하는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일본 금융기관으로 한다.
- 일본 입국 후 본인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숙소에 대하여
  - 예비교육기간 중의 유학생 숙소  
원칙적으로 예비교육기간이 운영하는 숙소에 입주할 수 있다. 숙소에 관한 제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전수학교 입학 유학생 숙소  
유학생 숙소에 계속해서 입주하거나, 각 전수학교가 알선하는 숙소에 입주할 수 있다. 숙소에 관한 제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채용 된 경우, 채용에 관한 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배치 학교, 전공 분야, 학과, 재직 기간, 수료 후의 진로, 연락처(주소, 전화 번호, E-mail 주소)를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유학생 사업(유학 중의 지원, 유학 종료자의 팔로우업, 유학생 제도 개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관계 행정 기관과 공유한다.  
또한 채용자에 관한 정보(생년월일 및 연락처를 제외)는 일본정부가 작성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촉진을 위한 홍보자료 등에서 특히,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귀국·국비외국인 유학생으로써 소개 하기 위해 공표하는 경우가 있다.  
국비·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용을 결정할 때 제출한, 국비·외국인 유학생으로서의 준수 사항을 정리한 서약서에서 본

취급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방침에 대해 동의한 자를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용한다.

- (7) 모집요강, 신청서류에 병기된 영문은 편의상 붙여 넣은 것이고, 영문에 의한 표현이 일본어 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 (8) 이 모집요강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그 외에 의문이 있다면 재외공관에 문의하고, 그 지시에 따를 것.
- (9) 이 모집요강에 정해진 것 이외에 국비외국인 유학생 제도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일본정부가 별도로 정한다.

\*주 1) 모집요강의 내용은 매년 일본정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람.

\*주 2) 본 내용을 추천기관 이외에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얻어 사용할 것(무단 사용을 금지한다).

#### <참고 연락처>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 <서류제출처>

# 주소: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담당 조규호 앞

# 이메일(수신전용): [kyuho.cho@so.mofa.go.jp](mailto:kyuho.cho@so.mofa.go.jp)

#### <일반 문의>

# 주소: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유학상담실

# 전화: 02-765-3011(145), 팩스: 02-742-4629, 전자메일: [yuhak@so.mofa.go.jp](mailto:yuhak@so.mofa.go.jp)